

펜실베이니아 인간 관계 위원회 및 COVID-19

펜실베이니아주 인간관계 위원회(Pennsylvania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당신이 살고, 일하고, 배우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곳에 관한 특정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집행합니다.

PHRC는 두 가지 차별 금지 법규인, Pennsylvania Human Relations Act(“PHRA”, 펜실베이니아주 인권 관계법)과 Pennsylvania Fair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PFEOA”, 펜실베이니아주 공정 교육 기회법)을 집행하고, 이들 법규는 고용, 주택, 상업 재산, 공공 시설, 및 교육 기관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 PHRA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교리, 혈통, 연령 (공공 시설에서 아님), 성별, 출신국, 장애, 안내 동물 또는 반려 동물의 사용, 및 가족 상태(오직 주택만)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고용주에 대해, PHRA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4명 이상의 개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적용됩니다.
- PHRA 및 PFEOA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합당한 시설 요건이 포함됩니다.
- 합당한 시설 요건은, PHRA 및 시행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히, 고용주, 주택 제공자, 및 공공 시설의 소유주에 적용됩니다.
- PHRA 및 시행 규정은 의학적 검사 및 질문에 대해 고용주에 대한 규칙도 규정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인권 관계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은 질병 통제 본부 또는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의 요건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PHRA, PFEOA, 및 시행 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체에 계속 적용되지만, 그 법과 규정은 고용주, 주택 제공자, 또는 공공 시설의 소유주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주, 주택 제공자, 또는 공공 시설의 소유주가 COVID-19에 관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CDC 또는 주/지방 공중 보건 당국이 만든 지침과 제안을 그 고용주, 주택 제공자, 또는 그 공공 시설의 소유주가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주, 주택 제공자, 또는 공공 시설의 소유주는 공중 보건 당국의 지침은 COVID-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필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 주택 제공자, 및 공공 시설의 소유주는 직장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에 대해:

EEOC는, 고용주가 직장에서 COVID-19의 영향을 다루는 전략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DA 및 재활법에서 규정한 직장 보호 및 규칙에 부합하는, 지침([Pandemic Preparedness in the Workplace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직장 및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있어서의 팬데믹 대비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문[PDF 형식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이전의 H1N1 발발 중에 작성되었던, EEOC의 팬데믹 발표문은 오늘날에도 아직 관련 있고 제정된 ADA 및 재활법 원칙을 가려내어 팬데믹 사태 동안에 직장에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 줍니다. COVID-19에 관한 예와 정보를 다루기 위해, 그 발표문은 2020년 3월 21일부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새로운 정보는 굵은 글씨로 나타냅니다).

- EEOC의 팬데믹 발표문에 있는 정보는 PHRA에 따라 고용주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PHRA에 따라 제기된 보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법과 대응하는 연방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석되는 한편, PHRA는 PHRA와 적용되는 연방 법규 사이에 구체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으면 상응하는 연방 법규보다 더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 환경에서의 흔한 질문에 대한 답변:

세계보건기구는 COVID-19를 국제적 팬데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EEOC 팬데믹 발표문에는 팬데믹이 선언된 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흔히 있는 고용주 질문에 답변하는 [별도 섹션](#)이 포함됩니다. 이 원칙을 COVID-19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흔한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변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아프다고 전화하는 직원에게서, COVID-19 팬데믹 사태 동안에 자신의 남은 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팬데믹 사태 동안에, ADA-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직원이 팬데믹 바이러스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그 직원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경우, 여기에는 발열, 오한, 기침, 숨참, 또는 인후통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직원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ADA에 따라 비밀 의료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ADA-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COVID-19 팬데믹 사태 동안에 직원의 체온을 언제 잴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직원의 체온을 재는 것은 의학적 검사입니다. CDC와 주/지방 보건 당국은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인정했고 종업원 주의를 발표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의 체온을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COVID-19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ADA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COVID-19의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직원에게 집에 머무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CDC는 COVID-19 증상으로 병이 난 직원은 직장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ADA는 이 조언을 따르는 직원을 해방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직장에 복귀하면, ADA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 적합성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한 질문은 그 질문이 장애와 관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ADA에 따라 허용되거나, 또는 팬데믹 독감이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그 질문은 직원의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위한 ADA 기준에 따라 정당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와 다른 의료인은 팬데믹 사태 동안과 팬데믹 발발 직후에 너무 바빠 업무 적합성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팬데믹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서식, 스탬프 또는 이메일을 제공하는 현지 클리닉에 대한 신뢰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채용하는 경우, COVID-19 증상에 대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고용주는, 동일한 유형의 직장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선별검사를 하는 한, 조건부로 일자리를 제의한 후 COVID-19 증상에 대해 취업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ADA 규칙은 지원자가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일자리 제의 후, 고용 후 의학적 검사의 일부로 지원자의 체온을 잴 수 있습니까?

예. 고용주는 조건부로 고용 제의를 한 후에는 어떠한 의학적 검사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COVID-19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COVID-19 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지원자의 업무 시작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CDC 지침에 따라, COVID-19 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개인은 직장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즉시 업무를 시작할 지원자가 필요하지만 그 개인이 COVID-19 또는 그 증상이 있을 때 일자리 제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현재 CDC 지침에 따라, 이 개인은 안전하게 직장에 출입할 수 없고, 그래서 고용주는 일자리 제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인간 관계 위원회는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직원, 주택을 구하는 사람, 또는 일반인이 불법적 차별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고충 신고서를 펜실베이니아 인간 관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 고충 신고서 서식의 사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hrc.pa.gov/File-A-Complaint/ComplaintForms/Pages/default.aspx>.

그 신고서는 PHRC로 우송할 수 있거나 phrc@pa.gov으로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또는 지침이 필요한 개인인 경우, 오전 9:00와 오후 5:00 사이에 717-787-9780번으로 저희 COVID-19 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